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3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고환율 대응)** 고환율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 육성)** 중기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선정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수출기업 육성

□ 모집규모 : OOO개사 내외

□ 사용기간 : 2026. 7. 1 ~ 2026. 12. 31.(6개월)

* 사용기간 내 이용분에 한해 정산가능
(단, 전시회의 경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 정산 가능)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규모 : 기업의 **'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	30백만원	최대 70% * 최근결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백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백만원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매출액	보조율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2.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중 1개 유형 신청

※ 「고환율 피해기업」 및 「레전드50+」 미선정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일반 수출기업 심사로 전환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수출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

① 고환율 피해 수출기업

- **(지원요건)** 고환율 지속으로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중, **'25년도 수출액 대비 원부자재·상품 직수입 금액이 20%이상인 기업**

※ 직수입 실적 : 별도 증빙 불요(신청기업 정보제공 동의 후 중진공이 관세청 통관실적 조회)

- (지원방식) 지원 대상의 성격에 따라 2개 트랙으로 구분 운영

구분	지원 대상	비고
트랙 1 (신규)	고환율 피해요건 충족기업	홈페이지 직접 신청
트랙 2* (기존)	'26년도 1차 및 2차 수출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고환율 피해기업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협약 한도의 50% 추가 한도 부여

* 예산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 평가점수, 한도 우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업만 지원 가능

② 레전드50+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37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③ 일반 수출기업

-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기업

신청 제외 대상(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공통)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방정부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7.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식품부(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해수부(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방정부(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4.7.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

※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 단, 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 제조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3. 지원한도 우대 및 졸업제

□ 지원한도 우대

① **(테크서비스 분야, 테크바우처 연계)** 테크서비스 활용 희망기업을 선별하여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 연계지원**

- **한도 추가된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는 '테크서비스' 메뉴판에 한정**하여, 사용가능(지원한도 총 50백만원, 보조율 70%)

【 테크서비스 바우처 메뉴판 】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식
클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비용	**사후정산** ※ 서비스 이용후 결과물 검토 거쳐 정산
데이터센터 활용	■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기료, 트래픽 비용 등 전산자원 활용 비용(해외 현지소재의 데이터센터 이용에 한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모바일 지원	■ 국가별 문화, 환경, 언어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재구성, 해외향 모바일 앱 및 웹 개발 비용 등	
기타 서비스	■ 전문가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임을 승인받은 항목	

【 테크서비스 바우처 한도우대 적용 예시 】

※ **(예시)** A사가 강소단계(정부지원금 한도 100백만원, 보조율 50% 가정) 선정

- A사 일반 수출바우처 강소단계 선정(정부지원금 100백만원 + 자부담금 100백만원 = **일반바우처 200백만원 발행**)
- 테크서비스 바우처 연계 희망 → 추가 선정 → 테크서비스 바우처 발행(정부지원금 35백만원 + 자부담금 15백만원 = **테크서비스 바우처 50백만원 발행**)
- A사는 **총 바우처 최대 250백만원 이용** 가능(일반바우처 200백만원, 테크바우처 50백만원. **테크서비스 분야로만 50백만원까지 이용**)

[지원한도 우대 관련 주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우대사항 해당 기업 중 평가점수 등으로 일부만 우대지원 가능(대상자 별도 통보)

② **(물류분야, 물류바우처 연계)** 물류 애로 해소 필요 기업 중 희망 기업을 선별하여 **물류 바우처 연계지원**

- **한도 추가된 물류 바우처**는 **국제운송 메뉴판에 한정**하여, 사용가능 (지원한도 총 15백만원, 보조율 70%)

※ **연계 시, 국제운송 최대 이용한도 확대**(60백만원 → 75백만원)

* 단, 26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물류 관련 지원한도 우대를 1회 이상 받은 기업은 제외

【 물류 바우처 한도우대 적용 예시 】

※ **(예시)** A사가 강소단계(정부지원금 한도 100백만원, 보조율 50% 가정) 선정

- A사는 정부지원금 100백만원 + 자부담금 100백만원 = **일반 바우처 200백만원 발행**
- 물류바우처 연계 희망 → 추가 선정 → 물류바우처 발행 = 정부지원금 10.5백만원 + 자부담금 4.5백만원 = **물류 바우처 15백만원 발행**
- A사는 **수출 바우처 215백만원 이용** 가능(일반바우처 200백만원 + 물류바우처 15백만원. **단, 국제운송 서비스 분야는 최대 75백만원까지 이용**)

□ 수출 바우처 졸업제

○ 수출바우처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가능**하나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각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 **합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23년 지원금**(바우처)부터 **합산**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 졸업제 적용 예외 】

① **강소단계** 선정 기업

②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고성장, 물류 바우처 활용, 테크서비스 바우처 활용** 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한도**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정부지원금액은 단계별 지원한도 합산 시 미포함**

③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내수단계에서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

4. 참여기업 신청 안내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청기간) '26. 7. 8(수) ~ '26. 7. 22(수)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공통	①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⑤	'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5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3-'24년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선택 (희망시)	⑧	'24-`25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⑨	'24-`25년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⑩	'24-`25년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 외화입금증명서 필수기재 : 신청인, 송금인, 일자 , 금액(실적기준은 '25년 입금 기준)
	⑪	지점 수출 합산 희망시	- **직수출 :** '24-`25년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 **간접수출 :** '24-`25년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그 외 수출 :** 신청 서류 ⑧,⑨,⑩

【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날인 후 다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을 업로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⑩) 수출실적 추가 인증 서류('24-`25년)**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 서류만 인정
- **(⑪) 지점 수출 합산** : 합산 희망 시, 신청 시스템상 관련 서류 업로드 필요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 수출바우처 사업은 직수출 및 간접수출, 서비스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동일하게 인정받아 수출단계 설정이 가능**

■ **직수출입 (상품 및 재화 수출입실적)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 **(별도 증빙 불요)**

■ **간접수출 :** KTNET 간접수출 실적증명을 통해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 **(별도 증빙 불요)**

- 단,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조회 예정으로 간접실적인정을 위한 대금입금 증명 등이 완료되어 조회 값으로 추출되어야 함

■ **기타수출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외국인도수출, 서비스 수출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서류 제출 시만 인정

■ **참고 :**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직수출, 간접수출 등, P. 7~8 신청기업 제출 서류 참조)**

② **목록통관 수출실적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수출증명(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 별도 제출 필요**

① 참여기업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보조금 청탁 등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컨설팅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금품, 성공보수 또는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 지역본(지)부에 설치된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유형 : 신청서류 허위 작성, 대출 알선, 정부기관 사칭, 부당 보험영업 등

② 불법 신청 방지를 위하여 고객은 중진공 임직원을 포함하여 그 누구와도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수출바우처 고객센터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문의 055-752-8580)**

③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협약 취소,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절차

○ 신속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선발**

① **(요건 검토)**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

② (서면 평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서류평가 진행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단,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서비스이용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서면 평가를 통한 선발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필요한 수출 지원서비스 이용 및 정산
'26.7.8 ~ '26.7.22		'26.8월 예정		'26.8월 中 (선정후)		'26.8월~ (사용기간은 7.1일부터 소급적용)		~'26.12.31

5. 가점사항

○ 정책적 지원 필요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평가시 가점부여

구분	가 점 항 목	가점	비고
1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1	증빙서류 필수
2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1	
3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역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1	CES 혁신상 수상기업 한해 증빙서류 필수
4	**정책 우대 중소기업** : 명문장수기업,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증빙 불요
5	**'25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유효기업)	1	
6	**전략산업 수출품목**(K-뷰티/패션) **영위기업**	1	

* 가점은 기업당 최대 6점까지 인정하며,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분에 한해 인정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5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관세대응 패키지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해결 등 관세 대응 관련 서비스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 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 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 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 가능
2.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부가가치세는 정산 불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6.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방정부,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시) 지방정부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사업을 활용하여 중복 정산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 **수출바우처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바우처 사용률**이 **85% 미만**일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률	참여제한
70% 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
70% 이상 ~ 85% 미만	▪ 5점 감점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85% 이상	▪ 제한 없음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정산 시 **운영기관 보완요구**를 **10일** (영업일 기준)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산 불가**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수행완료'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일정에 유의

□ **동일 법인**이라도 **한 개의 사업자**(사업자번호 기준)**만 선정 가능**하며, 수출바우처사업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7. 문 의 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02-3771-1050

[별첨] 특수관계기업 정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및 제23호

22. "특수관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나. 대표자가 단독으로 또는 대표자와 특수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다.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나목의 자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나목의 자가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23. "특수이해관계인"이란 대표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